

한·중·일의 법학교육과 임상법학교육

Law Education and Clinical Study in Korea, China and Japan

박 광 동*

Park, Kwang-Dong

목 차

- I. 서론
- II. 중국
- III. 일본
- IV. 한국
- V. 결론

국문초록

중국 및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법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학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한국도 종래부터 법학교육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9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임상법학교육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중·일의 법학교육은 법학이론과 실무의 단절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두되어 왔다. 현재 중국의 경우 법학부 교육과정 속에 임상법학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실무중심의 법률 석사학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법학교육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

논문접수일 : 2009. 6. 28.

심사완료일 : 2009. 7. 23.

제재확정일 : 2009. 7. 23.

* 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도 법학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임상법학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일본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임상법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상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법학교육은 단순한 법학지식의 전달이 아닌 사회봉사의식을 갖춘 직업윤리교육 및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법학교육은 법적 사고의 배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야 하므로 기초법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과 실무의 연계교육강화가 필요하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와 교육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사항을 전제로 교육목적에 맞는 다양한 임상법학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법학교육, 임상교육, 인턴쉽, 학외연수, 법과전문대학원

I. 서 론

중국 및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법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학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중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의 법학교육시스템 내에 임상법학교육이 도입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문적인 법학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법학교육 형태로써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임상법학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종래부터 법학교육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9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임상법학교육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법학교육과 임상법학교육의 실제적인 운영형태 및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법학교육과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중국

1. 법학교육

가. 현황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법학교육체계가 형성되어 있다.¹⁾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고등법학교육, 성인 고등법학교육과 법학계속교육 등이 있다. 둘째, 유형과 성질의 측면에서는 전일제 교육, 일시 휴업 교육 및 정시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법학교육의 수준에서 법학본과,²⁾ 법학 제2학위, 법학석사와 박사 등의 정식학위 교육도 있고, 법학중등학교, 단기대학 및 성인 법학교육도 있다.³⁾

전국적으로 대학의 법학전과(法學專科)⁴⁾에는 공공기초수업, 학과핵심수업, 필수수업과 임의선택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초수업은 국가교육부의 통일 규정에 근거해서 정치이론, 대학외국어, 계산기원리와 운용, 사상도덕수양(思想道德修養), 대학국어, 고등수학, 논리학, 정치경제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전공의 본과교육은 법리학·법제사·헌법·민법·상법·경제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법과 행정소송법·지적재산법·국제법·국제사법 및 국제경제법 등 14개 핵심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이외에 응용형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법조인재를 육성하고, 동시에 더욱 많은 비법학 전공자의 본과졸업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참고로 해서 1995년부터 법률석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⁵⁾

중국법학은 이론성과 사회실천성의 2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법학연구와 교육은 법학이론연구와 교양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의 이론지식과 문화소양의 향상에는 유리하지만, 법학의 실천능력 향상에는 불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법학부에서는 본과 고학년의 교육 중에 판

1) 중국법은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나라이다. 전통의미에서 법학교육은 대학의 학부단계에서 시작한다[이명저/ 김호역, “중국의 법학교육의 현저한 발전 및 주요문제점”,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12, 144면].

2) 한국의 4년제 일반대학의 법학전공에 해당함.

3) 王玉璣/堢毅, “中日教育の比較研究：法學教育の諸問題”, 「中央學院大學法學論叢」, 20(1/2), 中央學院大學法學部/中央學院大學, 2007.3, 113面.

4) 한국의 전문대학의 법학 관련 전공에 해당함.

5) 王玉璣/堢毅, 前掲論文, 111-112面.

례연구, 법원견학, 법률클리닉, 모의재판 등을 시행하고 있다.⁶⁾

나. 구체적인 예

주요대학 법대의 특색으로는, 첫째, 교과목편성에서는 ①채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중요과목이거나 학습량이 많은 과목은 과목당 4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점을 탄력있게 배정하는 점, ②법학원리, 중국법제사, 법리학 등 기초법에 속하는 과목들을 전공필수로 한 점, ③국제기술양도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무역과 기술양도법, 국제세법, 국제무역조직법 등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개설한 과목이 많다는 점, ④외국법제사, 외국헌법, 외국행정법, 영미불법행위법, 영미형법, 외국민법, 외국소송법 등의 외국법 과목이 상당수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법학교육 중에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법률실무, 법률클리닉, 모의 민·형사재판, 모의법외증재 등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셋째, 특별강좌, 심화강좌, 문현강독 등 다양한 학점이 부여되는 다양한 교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⁷⁾

다. 사법고시

2001년 6월 30일에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수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양법의 수정안은 모두 “국가는 초임법관, 검찰관과 변호사자격의 취득에서 통일적인 사법고시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5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수정안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국가의 통일적인 사법고시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사법부는 2002년부터 원래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사법부가 따로따로 실시하던 초임법관, 초임검찰관과 변호사자격고시를 전부 다시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고 통일적인 사법고시제도를 실시하였다.⁸⁾ 이러한 실시 후에 2002년에 시행한 전국사법통일고시는 고시자격요구에 있어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그리고 2003년부터는 일반대학 졸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통일사법고시의 실시가 법학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

6) 王玉璠/楊毅, 前揭論文, 109-110面.

7) 한상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중국법 교육”,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251면.

8) 2002년 이전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관자격고시는 법원조직내부에 한하여 진행되었다[潘劍鋒, “司法考試와 大學學部法學教育의 關係에 관한 論議”,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6, 89면].

장⁹⁾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즉, 사법고시로 인해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 이론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 중진이 아닌 사법시험 위주교육의 초래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의 “空虛化”를 초래하였다.¹⁰⁾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견해에 따라서는 법과전문대학원의 설립이나 법률석사교육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¹¹⁾

라. 문제점

첫째, 법학교육의 중점의 혼재가 있다. 종래의 중국 법학교육은 교육부 중심의 학술형 법학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대학 법률학과의 본과교육과 사법부 중심의 실무형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정법학원의 본과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양자의 본과교육의 목표가 동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술형도 아니고 응용형도 아닌, 혼재된 법학교육으로 인해 법률석사학위교육 후의 법학본과교육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었다.¹²⁾

둘째, 법학부 졸업생의 능력부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법학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입학정원의 증가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법학교육의 다원화 및 법학교육과 실제 법률생활과의 분리 때문이다. 또한 법학과의 고학년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교육의 불성실화 초래도 그 한 원인이 된다.¹³⁾

셋째, 법률석사학위교육의 문제가 있다. 많은 법학원의 법률 석사과정 교육은 교육방안과 설치과정, 교육방식, 교학방법, 교과내용 등의 방면에서 법학석사과정¹⁴⁾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결과적으로 학술형 인재로는 이론이 부족하고, 응용형 인재로는 실습이 부족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법률석사교육과 법조계의 실질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석사학위 과정의 창설시에 취지에 어긋나고 법률교육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¹⁵⁾

9) 국가통일사법고시는 첫째, 법학전공학생들의 취업경로를 넓혔고, 법률이 하나의 진정한 직업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중국의 법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셋째, 중국법학교육의 지휘봉으로 되었다. 넷째, 중국법학교육의 모델, 방법 및 내용의 개혁을 촉진하였다[汪建成, “國家統一司法考試가 中國의 法學教育에 미치는 影響”,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6. 108-112면].

10) 汪建成, 전계논문, 112면; 潘劍鋒, 전계논문, 94면.

11) 潘劍鋒, 전계논문, 98면.

12) 梁慧星 저/ 조주영 역, “중국의 법학교육과 인재양성”,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347-348면.

13) 王玉瑞/楊毅, 前揭論文, 103-106面.

14) 전통방식에 따라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의 양성에서 지도교수제와 전공체제를 실시한다. 부교수는 석사과정에 대한 지도자격이 있고 정교수는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도자격이 있다[이명저/ 김호 역, 전계논문, 145면].

15) 梁慧星 저/ 조주영 역, 전계논문, 348-350면.

2. 임상법학교육

가. 현황

종래 중국에 있어서 법학교육은 비판적 추론이나 법률적 문제를 분석해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기본적인 법원칙의 암기를 중시하였고, 또한 전문적인 기능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부족한 반면, 많은 법학부 졸업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률적 직업을 찾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분쟁시 그 해결요청은 많은 반면, 이를 해결해 줄 법률보조가 미흡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새로운 종류의 법학교육의 양식으로서 임상법학교육이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 의해 중국에 도입되었다. 2000년 9월에 포드재단의 지원 아래에 임상법학교육이 북경, 무한, 상해에 있는 7개의 각기 다른 법학원에 도입되었고, 2002년 이후에 중국법학회는 중국임상법학교육자위원회의 창설을 승인했다.

현재 중국의 임상법학교육의 형태는 공익소송클리닉, 노동자권리클리닉, 소비자권리클리닉, 여성권리클리닉, 공민권보호클리닉, 환경법클리닉,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클리닉, 커뮤니티클리닉, 종합클리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개개의 법학원은 개개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클리닉을 창설한다.¹⁶⁾

나. 구체적 예

중국 법대학생들은 3학년 때까지 이론수업과 실무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실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기중에 형사모의재판, 민사모의재판, 모의집의증재 등 활동에 참여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4학년 때에는 대개의 학생들이 사법기관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법률실습을 받는다. 중국학생들은 검찰원, 법원, 로펌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실습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각 법과대학은 인접한 검찰원이나 법원과 교류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외국유학생들은 국가기관인 검찰원 혹은 법원에는 실습을 나갈 수 없으나, 로펌, 변호사사무소 등에는 실습을 나갈 수 있다. 중국 주요도시의 로펌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유명대학 법대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실습비를 보조해주면서 인턴과정을 넓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석사 과정에서도 법률문서작성과 법률실무가 있고,¹⁷⁾ 모의법정훈련, 법률담판 등이 있다.¹⁸⁾

16)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譯・大坂恵里), “中國における臨床法學教育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79卷2号, 日本評論社, 2007.2, 57面; 松本克美, “日本における法曹養成とクリニック教育”, 「法律時報」, 79卷2号, 日本評論社, 2007.2, 41-42面;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3, 72-73면.

예컨대, 무한대학(武漢大學) 임상법학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센터를 기초로 해서 2000년에 창설되었다. 최근에 무한대학의 법률클리닉의 교원들이 새로운 종류의 클리닉인 비송클리닉을 개설했다. 이 클리닉에서는 약간의 학생이 임상교원에 의해 감독되는 실무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선택되어, 사회조사기능이나 그 외의 임상기능이 훈련되었다. 그 후, 임상교원은 학생에게 커뮤니티를 조사해, 그 커뮤니티가 법적 권리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있다. 또한, 무한대학의 3단위의 법률 클리닉코스는 수업부분과 실천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는 면담, 교섭, 공판 전의 준비나 공판기능, 법정보 조사·법문서 작성, 구두표현능력, 심리적인 적응 및 전문직 윤리와 같은, 복수의 Lawyering(면접교섭)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임상교원이 그러한 기능을 1인당 1개 내지 2개를 가르친다. 주된 방법은 role playing, 시뮬레이션, 세미나, 집단토론, 모의재판 등이다. 후자인 실천부분으로는 학생은 사회약자권리보호center(CPRDC: Center for Protection of Rights of Disadvantaged Citizens)의 일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원의 감독 아래에서 학생은 의뢰자와 면담을 시행한다. 만약 필요하면 학생은 의뢰자를 대리하여 법원이나 중재소(仲裁所)에 출정해서 변호하거나, 반대 당사자와 교섭하는 것도 할 수 있다.¹⁹⁾

다. 문제점

중국에 있어서도 임상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임상법학교육상의 학생의 지위가 불명확하다. 중국의 민법통칙이나 변호사법은 시민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변호사집무증을 가지지 않는 클리닉 학생도 의뢰자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클리닉의 학생은 의뢰자를 대리해 변론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중재소에 출정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증거조사의 권리는 자주 한정되고 제한되고 있다.

둘째, 임상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는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학문적·실무적 정열을 임상법학교육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과제성과율이 낮게 되어, 학교에서의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

셋째, 중국의 법률학교에서는 임상법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교가 적고 학생의 실습

17) 법률문서작성은 변호사, 검찰관, 법관으로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며, 법률실무는 해당 법대 혹은 검찰원, 변호사사무소 등에서 2-3주 실습을 하면 된다.

18) 한상돈, 전계논문 249면, 251면.

19) 박광동,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일감법학」, 제1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275-276면;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譯・大坂惠里), 前掲論文, 57面; 松本克美, 前掲論文, 42面.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학생인원수의 증가와 취직의 압력으로 인해 학생이나 감독자의 열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²⁰⁾

III. 일본

1. 법학교육

가. 현황

법학부의 법학교육에는 법률전공 과정 이외에, 법률직종과 관계가 없는 교양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법학부의 수업과목은 내용에 따라 일반교육과목, 외국어과목, 보건체육과목 및 전문교육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교육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전문교육 과목은 기초법학·사법학·공법학과 정치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법학교육 과정에 대한 설치의 특징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생의 지식시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기초과목의 설치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전공과목의 설치는 국가의 실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도 중시하고 있다. 필수수업은 국내법을 주로 하고, 선택 이수수업은 외국법 특히 영미법의 비율이 높다.

법학교육방법으로는 폭넓은 법률현상과 정치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이론을 교육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방법은 강의이다. 강의방식은 강의와 세미나의 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²¹⁾ 일본은 법학교육을 고등교육의 보급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기간(4년) 동안 실습에 참가시키지 않는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예습·강의·토론·시험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인 시험은 전기시험과 후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법학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본과학생은 반드시 졸업논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졸업시험에 합격해서 정해진 수업단위를 취득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학학사 취득 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의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된다.²²⁾

20) 박광동,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276-277면;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譯·大坂惠里), 前掲論文, 57面; 松本克美, 前掲論文, 43-44面; 王玉環/堀毅, 前掲論文, 103面。

21) 강의는 법학원리의 해명과 법조문의 해석 및 법률문제의 논의를 중시하고, 세미나는 학생의 연구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구체적인 예

동경대학 법학부의 경우에는 3개의 과정(사법, 공법, 정치)을 두고 있다. 학생이 이 수해야 할 과목으로는 필수과목, 선택필수과목, 선택과목, 수의(隨意)과목으로 되어 있다. 법학부 학생이 법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기간 동안 ①사법과정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46단위를 취득하고, 선택 필수과목으로 영미법, 프랑스법 및 독일법 중에 4단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필수과목 및 선택 필수과목의 단위와 함께 90단위에 달할때 까지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공법과정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42단위를 취득하고, 선택필수과목으로 영미법, 프랑스법 및 독일법 중에 4단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 제2부, 일본 정치, 행정학, 국제정치, 근대경제학, 경제학원리 및 재정학 중에서 4단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선택과목은 필수과목 및 선택 필수과목의 학점과 함께 90단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²³⁾ 교육방식은 강의실 내에서의 강의식 교육방법이 주를 이룬다.

다. 법과대학원

일본에서의 법조인 양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사법 수습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는 것은 사법 시험의 응시자격과 무관계'하며,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극심하게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이와 같은 종래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한계가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4월부터 법과대학원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²⁴⁾

현재는 74개교(국립대학 23개교, 공립대학 2개교, 사립대학 49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각 법과대학원은 교육 내용면에서는 법조인으로서 대비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수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헌법이나 민법, 형법을 비롯한 법이론 교육²⁵⁾ 뿐만 아니라, 쌍방향 또는 다방향적인 토론이나 질의응답에 의한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무가교원이 전체 2학년 이상 참여하며, 변호사

22) 王玉璣/堀毅, 前掲論文, 109-112面.

23) http://www.u-tokyo.ac.jp/gen01/reiki_int/reiki_honbun/au07403231.html(2009.6.21).

24)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법과대학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은 선급한 판단이다[須綱 隆夫,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制度の課題", 「한일법학」, Vol.25.26. 한일법학회, 2008. 155면].

25) 법학교육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이론의 개념이 다르다. 미국에서의 이론은 학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법률해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ダニエル H フット, "外からみた日本:法曹人口 法曹養成", 「法律時報」, 994号, 日本評論社, 2008.4. 30-31面].

등의 감독 아래에서 임상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⁶⁾

법과대학원의 설치기준으로서 표준수업기간은 3년이며, 93단위 이상을 취득할 것이 수료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다만, 법학기수자는 2년에 63단위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로스쿨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과대학원의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예습이 중심이 되고, 또한 강의방식은 주로 법학대학원교육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소크라테스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법과대학원은 예습에 필요한 참고문헌·참고판례를 과목별로 정리한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교재의 제작에 있어서도 실무에 중점을 둔 교재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다.²⁷⁾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한 설치기준으로서는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전개·첨단과목 등의 4분야를 통틀어 강의과목을 개설할 것과 학생의 강의과목의 이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함께 수강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수업의 형식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쌍방향·다방향 형식의 수업에서는 기말고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수업에 있어서의 학습상황을 평상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법과대학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저조한 합격률의 문제 및 법학기수자와 미수자 사이의 격차문제,²⁸⁾ 법학연구자의 양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과대학원 제도의 성공이 곧 높은 사법시험의 합격률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법과대학원 졸업생의 학습 달성을 무관계하고, 또한 주로 기존 법조계의 저항으로 인해 낮게 억제되어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 자체가 곧 사법시험과목에만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²⁹⁾

그리고, 법과대학원 출신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1년간의 사법수습제도가 유

26) 文部科學省高等教育部専門教育課専門大學院室, “法科大學院における法曹養成の現状”, 「法律のひろば」, 61(11), ぎょうせい, 2008.11, 4面;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ka/houka.htm(2009.6.21).

27) 岡村周一,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教育の現状と課題”, 「法학논총」, 제19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2, 280-288면; 浦川 道太郎,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教育の現状 -教育内容・教育方法に即して-”, 「한일법학」, Vol.25.26, 한일법학회, 2008, 136-138면.

28) 市川正人, “法科大學院における教育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994号, 日本評論社, 2008.4, 49-50面; 佐々木宗啓, “新司法試験の結果と法科大學院教育——平成18年から平成20年までの間の法科大學院別の結果分析”, 「法學教室」, No.340, 有斐閣, 2009. 1, 10-11面.

29) 최근에는 법과대학원생의 취업지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체로 법과대학원의 기본적인 이수과목에 대해 습득해야 할 범위 및 법적 사고력의 배양을 중시하는 목표설정 및 법과대학원수료시부터 취업시까지의 학습지원, 동문법조회의 협력과 지원, 수개의 법과대학원의 협력체제에 의한 새로운 취업지원시스템구축, 민간의 취업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中西 一裕 / 中綱 葉美子, “法科大學院の現状と就職問題”, 「自由と正義」, Vol.59 No4, 日本弁護士連合会, 2008.4, 93-96面; 日本弁護士連合会, “新しい法曹養成制度の改善方策に関する提言”, 日本弁護士連合会, 2009.1.16, 1面].

지됨으로써 법과대학원 교육과 사법수습제도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명확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특히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을 둘러싸고 표면화되고 있다.³⁰⁾

라. 문제점

일본에서는 법학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법학부의 커리큘럼은 구 제국대학의 것을 따르고 있다. 또한 다른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가 다원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은 보수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법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법학부의 증가와 입학정원의 증가로 법학학습의 기본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입학생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거나 효과가 미진한 경우도 많다. 또한 학부과정은 주로 법학이론을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고,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는 비교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실무법학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³¹⁾

2. 임상법학교육

가. 현황

일본의 전국 법과대학원 74개교 중에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52개교이고, 학외연수(Externship)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59개교로,³²⁾ 임상교육은 수적으로는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법과대학원에서는 법률상담을 학내에서 실시하거나,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견학시켜 관련되는 법적 문제점을 논의하는 형태가 많다. 이에 반해 학내에 법과대학원부설의 법률사무소를 마련해서 본격적인 법률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학내부설에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임해 수임한 사건에 학생을 관여시키고 있는 곳이 많다.³³⁾

30) 岡村周一. 전계논문. 289-293면; 須郷 隆夫. 전계논문. 153면.

31) 王玉璣/堀毅. 前掲論文. 102面.

32) 법조양성에 있어서의 임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법과대학원 창설의 제언 당시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즉,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염두에 둔 법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실무교육의 도입도 아울러 실시하는 것으로 해, 실무와의 가교를 강하게 의식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실무교육과목군의 예로서 「법조윤리, 법정보 조사, 요건사실과 사실인정의 기초,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면접교섭, Clinic, externship」을 제시하였다[四宮啓. “グローバル化する臨床法學教育”, 「法律時報」, 79卷2号. 日本評論社. 2007.2. 4面; 松本克美. 前掲論文. 49面].

33) 早稻田大・官法科大學院에서는 민사클리닉 뿐만 아니라 형사클리닉에 전임교원을 배치해서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도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國學院・東海・獨協・明治법과대학원이 협동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적인 클리닉 활동을 통해서 지역봉사나 사회공헌형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³⁴⁾ 및 각종 클리닉이나 학외연수(Externship)에 시뮬레이션을 혼합한 종합형의 임상교육³⁵⁾ 형태도 있다.³⁶⁾

나. 구체적인 예

칸사이대학법과대학원의 나카시마(中之島)법률 클리닉의 수업은 1학기에 2학점의 과목으로서, 2학년 2학기 이후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1명의 실무교원과 3명의 수강생이 1클래스를 구성해, 90분 수업을 14회 실시하게 된다. 1주째의 첫수업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60분 정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행해진 법률상담을 되돌아보고, 그 법률상의 문제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교원과 수강생과의 사이에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그 다음주에는 법률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수강생이 1주간 작성해 온 법률상담표(Karte)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상담 직후의 검토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토의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담의 수업과 토의의 수업을 반복하여, 최소 5건 정도의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법률상담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행한 법률상담의 사안을 예를 들면, 소장(訴狀)이나 조정제기서(調停提起書), 내용증명우편 등의 실무적 서면을 수강생이 기안해, 교원이 이것을 첨삭하는 학습을 2건 정도 실시한다.³⁷⁾

다. 문제점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현상적 문제점과 저해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³⁸⁾ 먼저, 현상적 문제점으로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실무계와의 연계가 현재까지는 소극적이라는

실시하고 있는 시부야 공공법률사무소의 클리닉에서는, 학생이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활동과 법학 연습적인 수업을 조합시켜 전개하고 있다.

- 34) 변호사 과소지역인 縣內의 낙도에 출장법률상담 실습에 임하고 있는 鹿児島대학클리닉,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나 성폭력(Sexual harassment) 등의 문제에 대해 인권옹호의 입장에서 임하는 立命館대학의 「여성과 인권클리닉」, 학생 스스로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의 활동을 전개하는 大官법과대학원의 정보공개클리닉, 자치단체의 정책입안도 지향하는 神奈川대학의 지방자치·외국인인권클리닉, 주민운동과 연계해서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는 早稻田대학의 행정법클리닉 등.
- 35) 中央대학이나 關西대학원대학 등.
- 36) 龜井尚也, 전계논문, 55-56面;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71-72면.
- 37) 木村哲也, “關西大學法科大學院の中之島リーガルクリニック”, 「法學セミナー」, no.627, 日本評論社, 2007, 3, 35面; 박광동,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271면.
- 38)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상법학교육학회를 설립(2008.4.1)하였다[井上 裕明, “法科大學院における臨床法學教育の課題 -臨床法學教育學會の設立に期待する”, 「自由と正義」, Vol.59 No.10, 日本弁護士連合會, 2008.10, 70面].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임상법학교육은 물론 법과대학원제도 자체의 시행기간이 짧고, 둘째, 임상법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셋째, 임상법학교육은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리고 임상법학교육의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을 보면, 첫째, 새로운 사법시험의 준비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즉 종래 예상과 달리 사법시험 합격률의 저조로 각 법과대학원 및 법과대학원생은 새로운 사법시험과 관계가 적은 임상법학교육 과목의 이수에는 소극적이다.⁴⁰⁾ 둘째, 법과대학원생의 지위의 문제로서, 현재 법과대학원생의 권한이 지극히 한정적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 점이다. 셋째, 임상법학교육의 형태를 사건수임형과 상담형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⁴¹⁾ 넷째, 커리큘럼상의 문제로 임상법학교육을 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많은 법과대학원에서는 학의연수 혹은 시뮬레이션과목에 대해 선택필수나, 혹은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다만, 완전한 선택과목으로 하게 되면, 이를 이수하지 않는 학생도 증가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⁴²⁾ 또한, 임상법학교육과목의 단위수는 2단위가 가장 많다. 이 점은, 법과대학원의 핵심적 과목인 임상법학교육의 기능을 고려할 때, 부족한 단위수라 할 것이다.⁴³⁾

이러한 현상적 문제점과 저해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즉, 첫째, 교원의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시행을 통한 효과적인지도 및 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교육내용에 있어서 법이론적 심도 있는 탐구와 함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임상법학교육을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할 임상교원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⁴⁴⁾ 그리고 넷째, 연구자교원을 법률클리닉에 관여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일본에서도 법과대학원생이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주가 정하고 있는 것 같은 학생실무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사법시험의 내용에 섬세한 지식이나 효율적인

39) 四宮啓. 전개논문. 4-5面.

40)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의법논집」. 제2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239면.

41) 현재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의 주류는 법률상담형 클리닉이다. 다만 최근에 사건수임형의 법률클리닉에서 실제로 사건을 수임해 그것을 법률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법과대학원이 생기고 있다. 즉, 九州大學, 早稻田大學 등은 연구자교원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뒤에 관여하고 있으며, 立命館大學 등에서는 변호사자격이 없어도 사전연수나 사후연수에 연구자교원이 관여하고, 법적 지식의 정리·확인이나 새로운 이론문제의 검토를 행하고 있다.

42) 松本克美. 前掲論文. 52面.

43) 박광동.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271-273면.

44) 齋井尚也. 전개논문. 57面; 松本克美. 前掲論文. 52-53面.

사무처리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 및 사실을 정리하는 힘이나 법적 문제를 발견해 응용하기 위한 기초력을 보는 것 같은 것으로 해서, 합격자 수에 집착하지 않고 일정한 질을 가진 사람을 합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법수습과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사법수습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견해처럼 사법수습과정으로 가는 사전적 학습과정으로 임상법학교육을 보아, 임상법학교육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⁴⁵⁾

IV. 한국

1. 법학교육

가. 현황

한국의 근대적 법학교육은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에서 시작하여, 1909년의 법학교, 일정시기에 들어와서는 1911년의 경성전수학교, 이어 경성전문학교, 1922년에는 다시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그리고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로 그 모습을 바꾸어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한국의 현행 법학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분리체제를 취하는 일본의 학제와 비슷한 전형적인 학부제형이며, 전체적으로는 봉급 생활자형 교육형이다.⁴⁶⁾

나.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관계

한국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1995년 1월에 설치한 세계화추진 위원회에 의해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안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학교육제도가 제안된 이유는 현재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단절되어 있고,⁴⁷⁾ 사법연수는 국가의 비용부담 아래 판사·검사·변호사의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⁴⁸⁾ 고급인력의 고시생화(고급인력의 장기적

45) 박평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74-75면.

46) 김용한, "한국에서의 현대 법학교육 반세기 회고와 전망", 「법학논총」, 제27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4면; 한상호, "법조개혁의 현황과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5.7. 16-17면.

47) 로스쿨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바로 현재의 사법연수원 만큼의 실무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법대교육과는 판이하게 다른 실무지향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70면].

실업자화) 및 대학교육의 사법시험 수험교육으로의 전락화(대학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의 연수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는 법학교육의 개혁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는데. 법학교육에 대한 개혁방안으로는 기존 학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입장⁴⁹⁾과 사법대학원 설치안⁵⁰⁾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안이 있었다. 현재는 이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중요내용을 보면, 본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동법 제1조), 동 법률에 의해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18조).⁵¹⁾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동법 제8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조인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동 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법학과목을 중시하면서, 법학교육과목의 다양화와 연계성의 강화를 통한 법학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현실적 법률관계를 해결할 수 있고 전문분야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전문화가 필요하다.⁵²⁾

다. 문제점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방법은 주로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주입식 강의형태가 이루어

48) 김창록,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논의”,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55면.

49) 법학 학제의 5년제 안 및 6년제 안이 있었다.

50) 기존의 4년제 법과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과대학에서는 일반교양으로서의 법학을 가르치고, 실무 교육은 사법대학원에서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5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0051>(2009.6.21).

52) 일본에서도 법률기본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2008년 9월에 법과대학원교육의 도달목표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법과대학원의 도달목표는 우선 법률기본과목에 있어서 취득해야 할 지식 및 능력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실무기초과목에 있어서 취득해야 할 지식 및 능력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日本弁護士連合会, “法科大学院教育の到達目標についての提言”, 日本弁護士連合会, 2008.9.3; 上石 奈緒, “法科大学院教育における到達目標”, 「自由と正義」, Vol.59 No.11, 日本弁護士連合会, 2008.11. 76面].

지고 있어. 법조인 양성의 기초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은 사법시험에 의하여 엄격히 단절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과목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 및 새로운 문제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⁵³⁾ 그리고 다전공 및 복합학문의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최소전공학점 인정 제도에 의하여 필수학점만 이수하면 당해 전공의 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법학전공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대학의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은 제도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학계와 법률실무계간의 교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를 교육할 만한 인재양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⁵⁴⁾

2. 임상법학교육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임상법학교육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법학교육은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향후 사법시험과 관계에 의한 임상법학교육의 역할 감소,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지위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법학교육의 시행에 있어서 사회봉사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상법학 교육은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교육담당자의 엄격한지도 아래 실제 이수시간과 학점을 비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시험문제의 현실적 탄력성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임상법학교육을 통한 실무적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나 과목을 일정비율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강의식(설명식)수업, Case method and Socratic

53) 견해에 따라서는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은 절대적으로 사법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대학원과정에선 이와는 달리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안경환,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Vol.33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51-52면; 한상호, 전계논문, 61-62면].

54) 김종철, "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제92호, 한국법학원, 2006.7, 152-155면; 김형두, "한국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정토론문", 「법학논총」, Vol.2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00-101면; 박민,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소고", 「교육법학연구」, Vol.18 No.2, 대한교육법학회, 2006. 77면; 한상호, 전계논문, 21면.

method(문답식 교육방법), Intership, Externship, Clinic 방법 등의 다양한 임상법학 교육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V. 결론

한·중·일의 법학교육은 법학이론과 실무의 단절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두되어 왔다. 현재 중국의 경우 법학부 교육과정 속에 임상법학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실무중심의 법률석사 학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법학교육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법학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법과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임상법학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일본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임상법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상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법학교육은 단순한 법학지식의 전달이 아닌 사회봉사의식을 갖춘 직업윤리교육 및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법학교육은 법적 사고의 배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야 하므로 기초법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과 실무의 연계교육강화가 필요하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와 교육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사항을 전제로 교육목적에 맞는 다양한 임상법학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용한, “한국에서의 현대 법학교육 반세기 회고와 전망”, 「법학논총」, 제27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김종철, “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제92호, 한국법학원, 2006.7.
- 김창록,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논의”,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7.8.

- 김형두, “한국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정토론문”, 「법학논총」, Vol.2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2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3.
- ,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일감법학」, 제1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 박민,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소고”, 「교육법학연구」, Vol.18 No.2, 대한교육법학회, 2006.
- 박찬운, “한국의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8.
- 潘劍鋒, “司法考試와 大學學部法學教育의 關係에 관한 論議”,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6.
- 須綱 隆夫,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制度の課題”, 「한일법학」, Vol.25, 26, 한일법학회, 2008.
- 안경환,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Vol.33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 汪建成, “國家統一司法考試가 中國의 法學教育에 미치는 影響”,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6.
- 梁慧星 저/ 조주영 역, “중국의 법학교육과 인재양성”,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 이명 저/ 김호역, “중국의 법학교육의 현저한 발전 및 주요문제점”,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12.
- 한상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중국법 교육”,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 한상호, “법조개혁의 현황과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5.7.
- 岡村周一,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教育の現状と課題”, 「법학논총」, 제19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2.
- 浦川 道太郎,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學院教育の現状 -教育内容,教育方法に即して-”, 「한일법학」, Vol.25, 26, 한일법학회, 2008.

- ダニエル・H・フット, “外からみた日本の法曹人口・法曹養成”, 「法律時報」, 994号, 日本評論社, 2008.4.
- 木村哲也, “関西大學法科大學院の中之島リーガルクリニック”, 「法學セミナー」, no.627, 日本評論社, 2007. 3.
- 文部科學省高等教育局専門教育課専門職大學院室, “法科大學院における法曹養成の現状”, 「法律のひろば」, 61(11), ぎょうせい, 2008.11.
- 四宮啓, “グローバル化する臨床法學教育”, 「法律時報」, 79卷2号, 日本評論社, 2007.2.
- 上石 奈緒, “法科大學院教育における到達目標”, 「自由と正義」, Vol.59 No.11, 日本弁護士連合會, 2008.11.
- 松本克美, “日本における法曹養成とクリニック教育”, 「法律時報」, 79卷2号, 日本評論社, 2007.2.
-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譯・大坂恵里), “中國における臨床法學教育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79卷2号, 日本評論社, 2007.2.
- 市川正人, “法科大學院における教育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994号, 日本評論社, 2008.4.
- 王 玉珊/堀 毅, “中日教育の比較研究：法學教育の諸問題”, 「中央學院大學法學論叢」, 20(1/2), 中央學院大學法學部/中央學院大學, 2007.3.
- 日本弁護士連合會, “法科大學院教育の到達目標についての提言”, 日本弁護士連合會, 2008. 9.3.
- 日本弁護士連合會, “新しい法曹養成制度の改善方策に関する提言”, 日本弁護士連合會, 2009. 1.16.
- 佐々木宗啓, “新司法試験の結果と法科大學院教育—平成18年から平成20年までの間の法科大學院別の結果分析”, 「法學教室」, No.340, 有斐閣, 2009. 1.
- 井上 裕明, “法科大學院における臨床法學教育の課題－臨床法學教育學會の設立に期待する”, 「自由と正義」, Vol.59 No.10, 日本弁護士連合會, 2008.10.
- 中西 一裕 / 中綱 築美子, “法科大學院の現状と就職問題”, 「自由と正義」, Vol.59 No.4, 日本弁護士連合會, 2008.4.

[Abstract]

Law Education and Clinical Study in Korea, China and Japan

Park, Kwang-D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of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ina and Japan have acknowledged problems in their law education and tried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law education system in many ways for a long time. In Korea,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mproving law education for many years and, as a result,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a new system for law education, has been introduced since March 1st, 2009. Under this new system, education for clinical study will be provided just as in China and Japan. However, we have not discussed problems resulting from this new system and solutions for them.

The gap between legal theories and practice in law educa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has resulted in many problems, and many ideas have been brought to solve such problems. These days, China has adopted practical law study system into the curriculum of an undergraduate law program and Master's of Law Degree program, which is practice-oriented. However, all those efforts have not solved problems effectively. On the contrary, they have caused confusion in law education systems.

Japan also has adopted the law school system and has emphasized clinical study in order to train professionals who know both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affairs, but such objective has not been attained yet.

Korea has just adopted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and is focusing on clinical study. Under this circumstance, in order to attain effectiveness in law education and to educate clinical study efficiently, we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irstly, law education is not merely passing-on knowledge of law, but work ethics as public services and humanity shall be emphasized; secondly, since developing legal mind is an important part of law education, so fundamentals of law education shall be given

more weight; thirdly, theories and practical affairs shall be linked with each other. This should be reflected not only to law school level but to undergraduate level also. and new curricula are needed to be offered; finally,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various ways of clinical law study tailored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should be introduced.

Key words : Law Education, Clinical Study, Internship, Externship, Professional Law Schools

